

고발 방법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았거나 장애에 대한 정당한 편의시설을 거부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뉴욕주 인권국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고발 양식은 차별 행위 발생 후 1년 이내에 인권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찾거나 예약을 위해서는 거주지 또는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 사무소로 연락하시거나 인권국 웹사이트인 www.dhr.state.ny.us 를 방문하십시오.

실례:

당신은 장애로 인해 휠체어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매장의 소량 계산대는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나 구매한 식료품 수가 소량 계산 서비스 해당 수량을 초과했습니다. 매장이 이러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경된 규정, 관례 또는 절차의 예는 장애인들이 구매한 식료품 수량에 관계없이 소량 계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처방약을 받기 위해 약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약국 입구에는 계단이 한 칸 있습니다. 약국은 휠체어 접근을 위해 계단을 없애야 할까요?

휠체어 사용자가 계단으로 인해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신속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면 약국은 계단을 없애야만 합니다. 계단을 없애는 것에 약국에 있어서 “신속히 실현 가능한” 일이 아니라도 약국은 가정 배달 서비스 또는 경사로 같은 대체 방안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이며 대중에게 개방된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큰 글자로 된 세미나 자료가 있어야 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세미나 주최측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대중에게 개방된 세미나라면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 양식으로 된 서면 자료를 제작해야 합니다. 대체 양식으로는 점자 또는 큰 글자로 된 인쇄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에서의 장애인의 권리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

ANDREW M. CUOMO, GOVERNOR

ONE FORDHAM PLAZA
BRONX, NEW YORK 10458
(718) 741-8400

WWW.DHR.NY.GOV

장애인의 권리

공공 편의시설 해당 장소

뉴욕주 인권법은 공공 편의시설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권법은 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정상적인 신체 기능의 막는 해부, 생리, 유전 또는 신경학상의 상태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의료적 장애, 또는
- 의료적으로 허용되는 진단 기술로 증명 가능한 장애, 또는
- 이러한 장애의 기록, 또는
- 타인이 장애로 여기는 상태

뉴욕주의 “공공 편의시설 해당 장소”: **호텔, 레스토랑, 소매 상점, 건강 진료소, 병원, 놀이공원 및 오락공원, 극장 등.**

금지되는 차별적 행동

공공 편의시설 장소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금지이며, 장애인이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 가능케 해야만 합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에 대한 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이익 또는 혜택의 거부를 나타내는 서면 자료를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정책 또는 절차에 대한 정당한 변경

공공 편의시설 장소는 장애인이 공공 편의시설을 이용 하기 위해서는 변경이 필요한 필요할 경우, 정책, 관례 또는 절차에 있어서 정당한 변경을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의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 변경이라면 정책, 관례 또는 절차에 있어서 변경을 조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조 지원 제공 요건

공공 편의시설장소는 보조적 지원 또는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이 서비스에서 제외되거나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조 지원”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인 수화 통역사,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큰 글자로 된 서면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공 편의시설 장소는 사업 또는 시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보조적 지원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구된 변경 사항이 사업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거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 할 부담은 공공 편의시설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가 집니다.

과도한 부담

“과도한 부담”이란 심각한 어려움이나 경비가 소요되는 것을 뜻합니다. “과도한 부담”의 결과를 낳는 조치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요구된 변경의 성격 및 비용은 공공 편의시설장소의 재원에 따라 균형이 맞춰집니다.

건축상의 장애물 제거

공공 편의시설 장소는 구조상 기존 시설에 있어서 “신속히 실현 가능한” 경우 라면 건축상의 장애물 및 의사소통상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법은 “신속히 실현 가능한” 을 과도한 어려움이나 비용 없이 쉽게 실현할 수 있고 수행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상의 장애물 제거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 출입구의 계단 제거 및 경사로 설치, 또는
- 출입구 또는 계산대 넓히기, 또는
-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카운터 낮추기

장애물 제거가 신속히 실현 가능하지 않다면 공공 편의시설 장소는 대체 방안을 통해 장애인이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 가능한 대체 장소에서 제공하거나 장애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직원을 교육시켜 제품과 서비스를 그들이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